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6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이연숙 의원

## 1. 제안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활성화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안 제6조~제7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농인등”이란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보급하고 농인들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증진) 군수와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서비스
2.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안전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법률)」(2023.8.8. 타법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2022.7.5. 일부개정, 2022.7.19. 시행)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수어통역서비스와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 지원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및 제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행사를 위한 전문 수어통역사의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5조)
-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6조)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양은숙 (☎ 2048)